

# 홍보게시물 관리규정

개정 2019.05.22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내의 홍보게시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, 바람직한 홍보게시물 문화 정착을 통하여 대학 홍보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적용대상 및 용어의 정의)

- ① 홍보게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학내에 부착 하는 모든 현수막 및 인쇄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1. “홍보게시물”이라 함은 구성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정된 현수막 설치대 및 옥내 외 게시판에 부착하는 현수막과 인쇄물을 의미한다.
  2. “현수막”이라 함은 형겅이나 종이를 사용하여 정·후문 및 현수막 설치대에 부착한 것을 말한다.
  3. “인쇄물”은 지면에 단색 또는 여러 색도를 이용한 유인물과 싸인펜 등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작성한 표현물을 말한다.

## 제3조 (홍보게시물 부착)

- ① 학교 내에 홍보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자는 정문 또는 대학에서 지정한 현수막 설치대, 옥내 및 옥외 게시판에 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.
- ② 정례행사로서 개교기념일, 입학식, 학위수여식, 체육대회, 시무식, 종무식, 정년퇴임식과 중앙 부처 차관급 이상의 방문 및 외국 교류협정대학 일행 방문, 입시관련 내용 등에 필요한 현수막은 정문에 게시하고, 기타 행사 및 홍보용 현수막은 현수막 설치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본관에는 원칙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.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## 제4조 (홍보게시물 게시 승인)

- ① 홍보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하는 행정부서, 외부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무팀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- ② 학과는 교무팀, 학생관련(학생회, 대의원회, 방송국, 동아리)은 학생상담팀의 확인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총무팀의 승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- ③ 총무팀장은 홍보게시물의 부착을 승인할 때에는 별표 1에 의한 “승인필” 인을 홍보물에 날인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05.22.>

## 제5조 (홍보게시물 관리)

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게시물 부착을 불허한다.

- ① 게시물이 미관·환경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② 현수막 설치대 및 인쇄물 게시 대에 가용 여백이 없을 경우
- ③ 게시물이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
- ④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게시물 또는 타인을 비방하는 게시물

제6조 (게시기간 및 철폐)

- ① 홍보게시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 후 1일 이내로 하되, 특별한 경우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할 수 있다.
- ②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은 게시 자가 철폐하여야 한다.

제7조 (관리자 임무)

- ① 홍보게시물 관리자는 담당구역의 홍보게시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홍보게시물 관리자는 다음 홍보게시물을 임의로 철폐할 수 있다.
  1. 승인 받지 아니한 홍보게시물
  2. 학교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에 부착한 홍보게시물
  3. 게시기간이 경과한 홍보게시물
  4. 홍보게시물의 내용·재질·규격 등이 면학분위거나 환경 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는 홍보 게시물

부 칙 (2013.06.04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9.05.22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

